Crowe

한울회계법인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2년 3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1 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세무 및 법률정보

- 세정동향, 디지털세 필라 2 모델규정 주석서 공개 및 OECD 공청회 계획 발표 등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21 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2.03.08]

'21 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심사.감리 결과]

① **(실적)** 금융감독원이 '21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52사**(표본 103사, 혐의 49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안정 정착**으로 전년 대비 **29사(23.6%) 증가**

②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
(83사 조치)로 전년(66.4%) 대비 **11.8%p 감소**(표본 심사.감리 34.0%, 혐의 98.0%)

③ **(위반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 유형** 위반이 **72.3%(60사)**로 상당 부분을 차지

* A 유형 지적률 추이 : 75.6%('19년) → 80.8%('20년) → 72.3%('21년)

④ **(위반동기) 고의(14.5%)** 및 **중과실(10.8%)** 비율이 **25.3%**로 **감소**하는 추세*

* 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32.9%('19년)→28.2%('20년)→25.3%('21년)

⑤ **(조치)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하였고, **회계법인 30사**, **공인회계사 68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

* 상장회사 과징금 추이 : 49.8억원('19년)→94.6억원('20년)→159.7억원('21년)

[시사점]

□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충실한 **감사절차**의 **수행** 및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Ⅰ 분석대상

□ 금융감독원이 '21 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52 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54 사**, **코스닥시장 94 사**, **코넥스시장 4 사**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103 사**, **혐의** 심사.감리는 **49 사** 완료

-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사제도**의 **안정 정착으로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가 전년**(123 사) 대비 **29 사(23.6%) 증가**

<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수 >

(단위 : 사, %)

구 분	'19년	'20년	'21년	'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 심사·감리	89	79	103	24	30.4
혐의 심사·감리	50	44	49	5	11.4
합 계	139	123	152	29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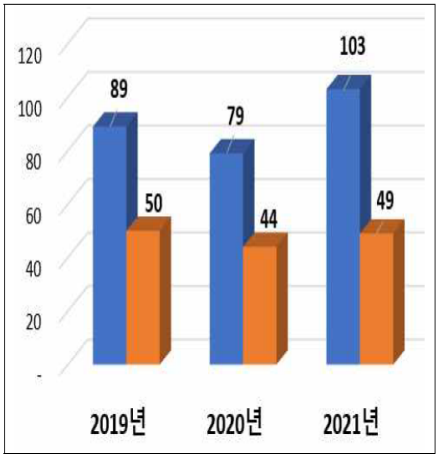

심사.감리 관련 용어 설명

◆ **(재무제표 심사)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

◦ **(표본심사)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

◦ **(혐의심사)**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

◆ **(감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Ⅱ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1 상장회사

위반건 등

□ **(전체)** '21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전년(78사) **보다 5사 증가**

◦ **(시장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31사(**54사 중 57.4% 지적), 그 외 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2사**(98사 중 53.1% 지적)

□ **(지적률)** '21년도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66.4%)** 대비 **11.8%p 하락**

*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 ÷ '21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 실적(152사)

◦ 전체 지적률이 낮아진 것은 총 위반 건의 소폭 증가(78사 → 83사, 5사↑) 대비 **표본 심사.감리 건의 큰폭 증가**(79사 → 103사, 24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충실화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4.0%(35사),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사)**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新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48.3%('19년)→44.3%('20년)→34.0%('21년)
**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78.0%('19년)→97.7%('20년)→98.0%('21년)

< 심사·감리 종류별 위반비율 >

(단위 : 사, %, %p)

구 분		'19년	'20년	'21년	'20년 대비
표본	회사수(위반)	43	35	35	-
	지적률	48.3	44.3	34.0	△10.3
혐의	회사수(위반)	39	43	48	5
	지적률	78.0	97.7	98.0	0.3
합 계	회사수(위반)	82	78	83	5
	지적률	59.0	63.4	54.6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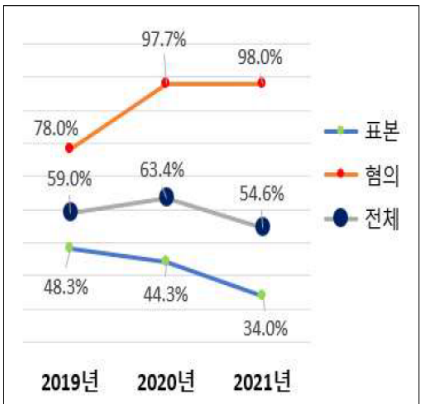

□ **(표본 선정 방법별)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당년 **지적률**은 **43.6%**(전체 39사 중 17사 지적), **테마**는 **23.9%**(전체 46사 중 11사 지적), **무작위**는 **36.8%**(전체 19사 중 7사 지적)

◦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이 **높은**데 이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본선정이 효율적**임을 나타냄
* 3년 평균 지적률도 위험요소(53.7%) > 무작위(39.4%) > 테마(37.1%) 순

※ 표본심사 대상 선정방법

①**위험요소**: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②**테 마**: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
③**무 작 위**: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 표본 심사대상 선정방법별 위반현황 >

(단위 : 사, %)

표본 선정방법		'19년	'20년	'21년	3년 기준*
위험요소	회사수(위반)	19	21	17	57
	지적률	45.2	72.4	43.6	53.7
테마	회사수(위반)	12	9	11	32
	지적률	63.2	24.3	23.9	37.1
무작위	회사수(위반)	12	5	7	24
	지적률	42.9	38.5	36.8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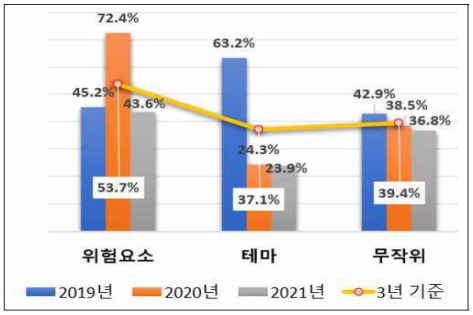

*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산, 지적률은 각 연도별 지적률을 단순 산술평균

위법행위 유형별

□ **(위반유형별)**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0사**(전체 83사의 **72.3%**)로 전년(63사, 80.8%) 대비 **3사(8.5%p) 감소**
* 연도별 A유형 위반비율 추이 : 75.6%('19년) → 80.8%('20년) → 72.3%('21년)

◦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사**에 달하며, 매년 증가*
* 기타 유형(B~D유형) 위반 상장회사 수 추이 : 14사('19년) → 15사('20년) → 23사('21년)

※ 위법행위 유형별 분류

①**A 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②**B 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 과대(과소) 계상 등과 관련되는 경우
③**C 유형**: 위법행위가 주석사항(특수관계자 거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소송 등에 따른 우발부채 등)과 관련되는 경우
④**D 유형**: 위법행위가 C 유형 외의 주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A~C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법행위 유형별 지적 현황 >

(단위 : 사, %)

위반유형		'19년	'20년	'21년	3년 기준**
A 유형*	회사수 (위반)	62	63	60	185
	지적률	75.6	80.8	72.3	76.2
기타	회사수 (위반)	20	15	23	58
	지적률	24.4	19.2	27.7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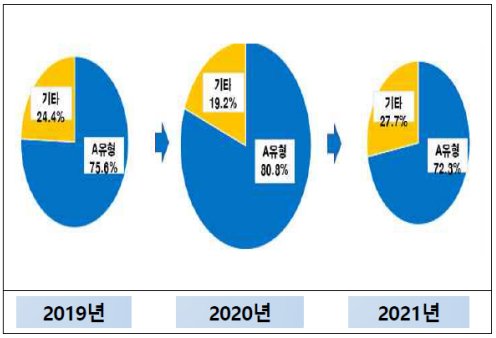

* 지적유형이 A유형과 기타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회사는 A유형으로 분류

** 유형별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계, 지적률은 각 연도별 지적률을 단순 산술평균

□ **(위반건수 분포)** '21년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는 **150건(평균** 1.8건)**

* 1개 회사에 여러 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복수 건으로 집계

** '21년 전체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150건)를 위반회사(83사)로 나누어 산정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9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4사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21년)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합계
회사 수	39사	28사	10사	5사	1사	83사

위법행위 동기별

□ **(고의.중과실)** '21년도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사*(14.5%)**, **중과실**은 **9사**(10.8%)로 위험요소(표본), 회계부정신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감리 결과임

* 전년(14사, 17.9%) 대비 2사(3.4%p) 감소

◦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은 **매년 감소***

* 중대 위반비율 추이 : 32.9%('19년)→28.2%('20년)→25.3%('21년)

◦ **(과실)**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

* '과실' 결정 비율 추이 : 67.1%('19년)→71.8%('20년)→74.7%('21년)

- 이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임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이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판단

< 위법행위 동기별 구성 현황 >

(단위 : 사, %)

위법행위 동기		'19년	'20년	'21년	3년 기준*
고의	회사수(위반)	7	14	12	33
	비율	8.5	17.9	14.5	13.6
중과실	회사수(위반)	20	8	9	37
	비율	24.4	10.3	10.8	15.2
과실	회사수(위반)	55	56	62	173
	비율	67.1	71.8	74.7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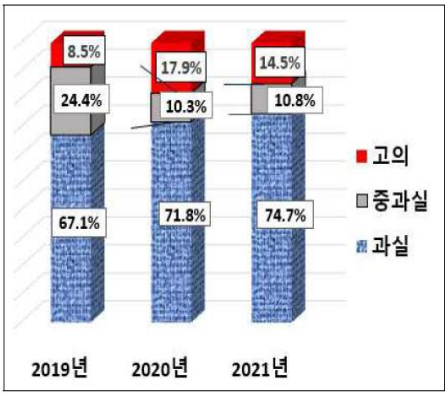

*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계, 비율은 각 연도별 비율을 단순 산술평균

과징금 등 조치

□ **(과징금)**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부과금액**은 **증가***하여,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 증가****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49.8억원('19년)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 : 2.2억원('19년) → 5.6억원('20년) → 11.4억원('21년)

◦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기인

<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 사, 억원)

과징금	'19년	'20년	'21년
부과 회사 수	23	17	14
부과 금액	49.8	94.6	159.7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	2.2	5.6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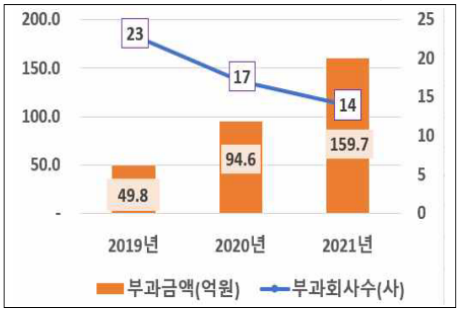

□ **(수사기관 통보 등)** '21년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6건)는 **총 22건**으로 전년(13건) 대비 **9건 증가**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21년도 2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30건**으로 전년(37건) 대비 **7건(18.9%) 감소**

* ´21년도 감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가 있는 상장회사 수
** 회계법인 조치 건수 추이 : 87건('19년)→37건('20년)→30건('21년)

◦ 이는 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

◦ 한편, 전체 30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10건**으로 전년(13건) 대비 3건 감소

* 대형회계법인 4사 조치 비중 : 25.3%('19년) → 35.1%('20년) → 33.3%('21년)

◦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18.11.1.) 이후 전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되어, 당년에 그 **부과금액이 증가***

*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금액 추이 : 2.7억원('20년)→ 8.4억원('21년)

□ **(공인회계사)** ´21년도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8명**

◦ 이는 회사가 경조치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은데 있으며, 전년(95명) 대비 **27명(28.4%) 감소**

< 상장회사 감사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조치 현황 >

(단위 : 사, 명, %)

구 분	'19년	'20년	'21년	'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회계법인	87	37	30	△7	△18.9
공인회계사	177	95	68	△27	△28.4
법인당 평균	2.03	2.57	2.27	0.30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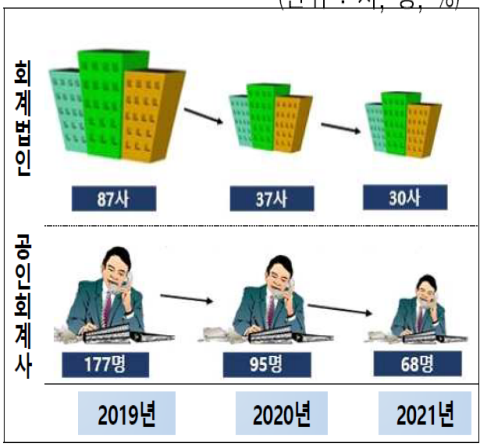

※ 회계법인은 조치 건수, 공인회계사는 조치자 수 기준

Ⅲ 시사점

①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므로 **회사** 및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48.3%('19년)→44.3%('20년)→34.0%('21년)
**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32.9%('19년)→28.2%('20년)→25.3%('21년)

② 중대 위반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

◦ **'고의' 또는 '중과실' 등 중조치 건**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 중인 바,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검증 등을 강화**할 필요

*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 49.8억원('19년)→94.6억원('20년)→159.7억원('21년)

③ 기업 리스크를 고려한 감사수행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과실'인 경조치 건**의 **심사종결로** 감사인에 대한 감리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감사절차 소홀.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바, **감사인**은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 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누락.소홀**이 **없도록 충실한** 감사절차의 **수행** 및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참고
감리결과 지적사례

참고 **감리결과 지적사례**

1 매출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 **(지적내용)**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는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직면하자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 **서류상**으로만 **B사의 특수관계자인 C(개인)**로부터 **상품을 10억원에 매입**한 후 이를 다시 **B사에 15억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15억원 및 10억원 허위계상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 거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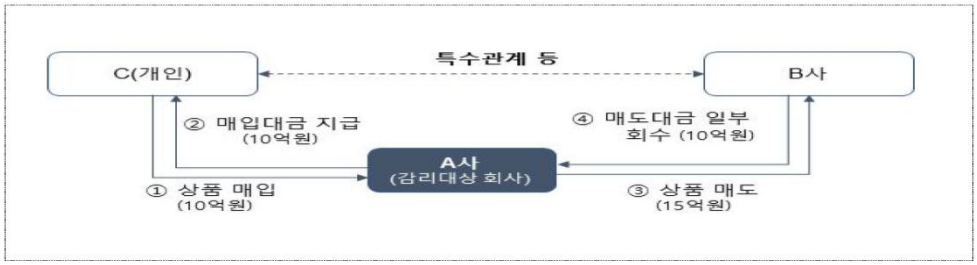

□ **(조치내용)**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 조치

2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지적내용) 종속회사의 지분투자, 자금대여 등**과 관련하여 모회사인 B사는 **자회사가 진행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과다비용 발생문제 등 **중요한 불확실성** 및 대여금의 **사적 유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손상징후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투자관련계정**(관계기업투자자산, 기타금융자산)을 **과대계상**

* 손상관련 주요 위반사례 : ① 내용연수가 무한하거나 비사용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매년 하여야 함에도 미실시 ② 손상징후 검토시 외부정보원천(시장이자율 등) 및 내부정보원천(진부화 등)을 미고려 ③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할인율로 세전할인율 미적용 등

□ **(조치내용)** 증선위는 B사에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

3 위탁매출 회계처리 오류

□ **(지적내용)** 기업회계기준서의 **위탁약정**에 따르면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기업이 제품을 **다른 당사자(중개인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제품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그 인도한 제품을 **인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C사는 미국 소재 종속회사에 대한 판매계약이 위탁약정에 해당하여 최종 판매시 판매가를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미국법인에 인도한 시점에 인도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대(과소)계상

□ **(조치내용)** 증선위는 C사에 **주의** 조치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디지털세 필라 2 모델규정 주석서 공개 및 OECD 공청회 계약 발표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세정동향,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주석서 공개 및 OECD 공청회 계획 발표 등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2.3.14일(월)(현지시간)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대외 공개하였습니다.

* Inclusive Framework: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포괄적 회의체 (現 141개국 참여)
**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 적용하여 미달세액만큼 과세

○ 이는 지난 `21.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예시 등을 포함합니다.

○ 주석서의 내용은 모델규정과 병행하여 준비되어왔으며, 모델규정 합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완성됩니다.

○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OECD는 'GloBE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에 대한 공청회(Public Consultation) 진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GloBE 이행체계란,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 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GloBE 실효세율 계산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신고를 위한 표준 양식 및 동 신고서의 국가간 교환메커니즘 등 마련
** 복잡한 GloBE 규칙 적용에 따른 이행·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업을 GloBE 규칙 적용에서 제외하는 간소화 방안

○ OECD는 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행체계 수립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아래 질문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 GloBE 모델규정 및 주석서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 이행체계와 관련된 의견만이 수렴 대상

< OECD 질문사항>

- 이행체계의 일부로서 추가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한 항목과, 필요한 행정 가이드라인의 종류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
- 신고(filing), 보고 시스템 등 정보 수집(information collecting) 및 기록 보관(record keeping) 관련 의견이 있는지? 특히, 이행비용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성·정확성·검증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단순화와 세이프하버 이용 등을 포함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이행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 규칙 간 조화를 극대화하고, 조세확실성을 높이며,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된 의견이 있는지?

○ 서면의견은 4.11일(월)까지 OECD에 이메일로 제출되어야 하며, OECD는 이를 반영하여 4월 말(세부 일정 미정) 화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임.

※ OECD 의견 제출 방법
① GloBE 모델규정 · 주석서 및 OECD 질문사항 등 확인(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the-implementation-framework-of-the-global-minimum-tax.htm)
② 의견 작성 (MS Word 사용)
③ 이메일 제출 (수신처: taxpublicconsultation@oecd.org)

□ 정부는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GloBE 이행체계 관련 OECD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

* 주석서 원문: https://www.oecd.org/tax/beps/oecd-releases-detailed-technical-guidance-on-the-pillar-two-model-rules-for-15-percent-global-minimum-tax.htm

종합부동산세 제도보완

□ 정부는 2022.2.15.「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주택 유형	종 전	개 정
❶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 (읍·면지역 제외), 광역시 (군지역 제외) 外 지역
❷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보유주택**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 (0.6~3.0%, 1.2~6.0%), 세부담상한 적용
❸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종부세 과세**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❶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일정기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❷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 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❸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하였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 월말 국세청 고지, 12.1.~12.15. 납부

□ 국세청은 2022.3.24.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 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임.

□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1 수입 명차 리스) 고액이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 (90명)

- 사례1: 유사수신업체의 사주일가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 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

- 사례2: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한 시행사는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으나, 법인 대표는 최고급 수입 명차를 체납법인의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

○ (유형2 재산 편법 이전)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 (196명)

- 사례3: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사채업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
- 사례4: 회사명의 연금보험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법인

○ (유형3 호화생활 영위 등)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 회피 혐의 (298명)

- 사례5: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 사례6: 대표자 자녀 명의로 유사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 강제 징수 회피

□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입니다.

○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 처별도 함께 추진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특허권 공동소유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전법규국조 2022-81사전법규국조 2022-81)

(사실관계)

○ 질의법인(A법인)은 리튬전지 제조 및 판매 등 배터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4.1. 배터리사업 중 배터리 분리막 생산사업을 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배터리 분리막 생산 관련 특허권 등("쟁점특허")을 B법인과 공동소유하고 있음

○ 2021년 A법인과 B법인은 B법인의 중국자회사인 C법인에게 쟁점특허의 사용을 허여하고, 그 대가로 C법인으로부터 B법인을 통해 특허권사용료("쟁점로열티")를 수취할 예정

○ 이에 따라 A법인과 B법인은 쟁점로열티의 분배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C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로열티를 각자의 공헌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기로 함

○ 한편, B법인은 C법인으로부터 쟁점로열티 수취 시 A법인 귀속분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분배금 지급 시 이를 상계하며,

○ A법인은 분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함

(질의내용)

○ B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특허권 사용을 허여한 대가로 받은 수입로열티에 대해, 해당 특허권의 공동소유자인 A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에 대해 외국법인(C)과 해당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와 B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특허권 사용계약은 B가 단독으로 C와 체결하고, B가 C로부터 받는 특허권 사용대가 중 A에게 귀속될 금액("A 귀속분")은 수취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A에게 지급 시 그 지급액과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A법인은 "A 귀속분"을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A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운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22-114, 2022.02.2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함

- 국내소비자로부터 국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복합운송을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의 주소지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수취하고

- **.9.20. 본건 용역 제공을 위해 국외에 있는 해외운송주선사업자인 △△△△ 국제물류유한공사(이하 "◇◇법인")와 국제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의 해외배송 업무를 재위탁함.

○ ◇◇법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국제운송위탁계약의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인 **@@@@공급관리유한공사(이하 "물류관리법인")과 위탁대리 물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해외배송대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

- ◇◇법인은 B2C직송 주문서에 기재된 화물을 물류관리법인의 지정창고로 보내고

- 물류관리법인은 ◇◇법인이 보낸 주문 정보에 따라 화물을 포장, 부착(조작)하며, 국제운송물류회사인 **택배를 이용하여 한중우편을 사용하여 물품배송을 진행함

○ 신청인은 본건용역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배송, 국내배송, 세관검사 후 포장오류 등으로 인한 파손, 손괴 및 결실 등은 회원이 신청인에게 접수하여 신청인이 직접처리하고(약관§13(10))

-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모든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개입하여 처리 진행함(약관§13(12)

○ 한편, 국내소비자는 신청인의 사이트(이하 "☆☆☆")를 통해 해외배송 진행현황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함

(질의내용)

○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배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업 무 소 개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